

검 토 보 고 서

| | | | |
|-------|--|-------|---------------|
| 건 명 | 논산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| | |
| 의안번호 | 제28호 | 제 출 자 | 이태모 의원 등 6명 |
| 제 출 일 | 2024. 03. 13. | 회 부 일 | 2024. 03. 13. |

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에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
에 관한 사항에 대해 논산시의회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통일적·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.

2. 주요내용

- 목적과 정의 (안 제1조 ~ 안 제2조)
- 적용범위 (안 제3조)
- 제출시기 및 의안형식 (안 제4조 ~ 안 제5조)
- 자료제출 및 의결기한 등 (안 제6조 ~ 안 제7조)
-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(안 제8조)
- 사후관리 (안 제10조)

3. 검토의견

- 이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에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
에 관한 사항에 대해 논산시의회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통일적·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
-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, 제47조제1항제8호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